



재단법인 Senior Healthcare Sharing Foundation

노인의료나눔재단

수신 : 수신처 참조

(경유) : 어르신(노인) 복지 지원 담당자

제목 : 「2019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」 사업 안내 요청

1.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보건복지부 「2019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(치매정책과-428. 2019.2.8)」 관련입니다.

3. 우리 재단은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의거 전국 보건소를 통해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접수 받아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 지침 ‘(제5항 신청절차 및 방법)’에 의하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보건소에 대리 신청이 가능’ 하지만,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본 지원 사업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어르신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노인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신청·접수 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(읍·면·동 주민센터)에 붙임 자료를 하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

- 다 음 -

가. 요청내용 : 본 지원사업의 안내 및 홍보요청 공문 발송

나. 발송처 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

다. 사업근거 :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(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),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

붙임 : ①보건복지부 2019 사업지침 요약본 1부.

②사업홍보 브로슈어 1부. 끝.

재단법인 **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장**



수신처 : 전국 226개 시·군·구 기초지방자치단체장

주임 : 나윤주

본부장 : 김효진

처장 : 정종범

상임이사 : 나병기(전결)

시행: 제 2019-89(2019.6.14)

홈페이지: <http://www.ok6595.com>

우: 04517 주소: 서울 중구 통일로 86, (순화동, 바비영3) 701호 노인의료나눔재단

전화: (02)711-6599 팩스: (02)3210-3388 이메일: 6595ok@hanmail.net

2019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

1 지원대상 및 범위

- 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(1959년생 이상)
①의료급여1,2종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 이외)③차상위계층④한부모가족
- (예 산) 사업비 26.5억원(약 2,200명)
- (근 거) 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, 노인복지법 제27조의4(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),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
- (대상질환) 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'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

2 수술비 지원

- (수술비지원액)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
- (지원범위)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
- (지원제외)
 - 간병비,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, 보호자 식대, 통원치료비
 -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, 치료비, 입원료 등
 -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

3 신청절차 및 방법

- (대상자) 전국 보건소에 신청(진단서, 신분증 지참), 지원대상 결과 통보 받고 3개월 이내 수술
※읍·면·동 주민센터 공무원,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 신청 가능
- (보건소) 공적자격여부 확인후 재단에 적격자 추천,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결과통보
- (재단) 대상자 및 보건소에 지원대상 결과 통보, 수술시행 의료기관에 수술비 지급
- (의료기관) 수술시행, 환자 퇴원시 차감한 지원가능금액을 재단에 수술비 청구

4 상담문의

- 상담시간 09:00~17:00
“나눔과 배움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”
www.ok6595.or.kr

 02-711-6599

무릎이 아프신가요? 수술비 지원해 드립니다.

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

“나눔과 베품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”

신청문의 **NAVER** 노인의료나눔재단 검색

1661-6595

www.ok6595.or.kr

■ 지원대상 및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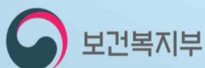
- 연령 :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
- 질환 : 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'에 해당
- 대상자 :
 - 1 의료급여 1, 2종
 -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 이외)
 - 3 차상위계층
 - 4 한부모가족

■ 수술비 지원

- 본인부담금의 **최대 120만원** 한도(한쪽 무릎 기준)
검사비, 진료비, 무릎인공관절 수술비

■ 접수기관

- 전국 시,군,구 보건소
(보건소 신청시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
의사 소견 명시된 진단서 지참)



노인의료나눔재단은 보건복지부와
'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'을 수행하는 기관



재단이사장

김상한